

세무와회계저널
제10권 제1호 2009년 3월 pp.205~222
한국세무학회

세법상 현금영수증제도에 관한 문제연구

김영심* · 박규현**

<요 약>

우리나라에서는 현금거래비중이 높아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세원(稅源)을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는 공평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장애가 되고 있었으며, 결국 정부는 세원의 투명화와 공평과세를 위해 현금영수증제도를 2005년 1월 1일 최초로 도입하였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행 현금영수증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소액의 현금거래를 행하는 영세사업자들이다. 법률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이 적절하다 할지라도, 만약 보호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을 침해한다면 헌법상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제도를 올바르게 정착시켜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전문직사업자와 학원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의무화정책이 정착단계에 이르면 모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그 대상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혜택을 늘려 현금영수증의 주 사용계층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현금영수증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안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현금영수증미가맹점에 대한 가산세 부과규정을 개정하여 당초의 가산세 부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현금영수증제도 관련 개선방안들이 이미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 개선방안은 현금영수증제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를 통해 형평과세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현금영수증제도, 과세표준 양성화, 공평과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의 단계적 추진, 개인정보 보안시스템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kyslaw@sogang.ac.kr, 02-705-7846, 제1저자

** 국세청 조사관, 법학 석사, ghparkusii@hanmail.net

논문접수일 2009년 1월

게재확정일 2009년 3월

I. 머리말

2004년 11월 초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 음식점주 쉼기대회’에서 생계 보장을 요구하며 ‘밥술’을 집어 던졌던 사람 가운데 한명인 음식점주인 A씨, 그는 2005년 현금영수증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심한 걱정과 압박에 빠져 있었다. 자영업자들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현금영수증제도를 드러내놓고 반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누구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평등의 원칙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 주장의 요지는 “그동안 벌어들인 만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금 제대로 다 내고 돈 버는 음식점이 한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라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총 민간소비지출 중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말 현재 약 41.7%에 불과하다.¹⁾ 따라서, 현금거래비중이 여전히 높아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세원(稅源)을 정확히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는 공평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장애가 되고 있었으며, 결국 정부는 세원의 투명화와 공평과세를 위해 현금영수증제도를 2005년 1월 1일 최초로 도입하였다. 그리고 시행 3년째인 2007년의 경우 연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50조원을 상회하여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등, 신용카드의 경우 연간이용금액 18조원 달성에 10년 이상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제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다.²⁾ 또한, 자영업자 현금거래 노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상당한 과세형평성 제고의 효과를 거두는 등 긍정적 측면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 현금영수증제도를 구상할 당시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및 빈부의 양극화 해소 차원의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현행 현금영수증제도는 소액의 현금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영세사업자들이 주요 사용대상이 되고 있다. 법률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방법이 적절하다 할지라도, 만약 보호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을 침해한다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법상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하여 과세표준 포착률과 세수증가 등 시행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현재 제도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근로소득자와 사업자간, 영세사업자와 고소득사업자간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현금영수증제도가 더욱 견고하게 정착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한국은행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통계자료

2) 2007.12.27자 국세청 보도자료

II. 현행법상 현금영수증제도의 이론적 배경

1. 현금영수증제도 개요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³⁾,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이다. 만약 발급을 거부하여 신고된 사업자가 있는 때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장치 설치를 요구하고,⁴⁾ 세무서 직원이 단말기 사용법을 직접 설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거부하여 재차 신고가 된다면, 수정신고를 권장하거나 탈세혐의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우리나라의 소비시장에서 현금거래 비중이 전체 소비자 거래의 58.3%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그리고 근거과세를 원칙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조세징수상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과세금액에 대한 불형평성에서 오는 근로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그 시행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⁵⁾

2.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 탈세를 방지하고 근거과세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신고납세제 하에서는 자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장거래, 가공거래, 매출·매입누락과 같은 부당거래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면 거래대금에 대한 결제내용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노출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저절로 포착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정부는 1999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219개 업종 31,344명을 지정하고 단계별로 가맹점 가입 대상을 확대 지정하여 행정지도를 펼쳤으며, 2000년에는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⁶⁾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분 중 일정 비율을 소득 공제해 주는 제도를 1999년 도입하고 2000년부터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급받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매월 16억원⁷⁾을 지급하는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를 실시하는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⁸⁾

3) 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4) 단, 권장사항임

5)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제도는 2003년 12월 30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제126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6) 1% → 2%

그러나, 여전히 민간소비지출의 절반 이상이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한계를 보였다. 즉, 여전히 소액거래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으로 결제되고 있었고,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로 인해 신용카드 가맹권장에도 한계가 있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만으로는 뿌리 깊게 형성된 현금거래 선호 관행을 바꾸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이다.⁹⁾ 결국 절반의 성공에 그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즉 민간소비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금거래분에 대한 과세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 이하 ‘재경부’)와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2003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및 제126조의 3에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근거를 신설하였다.¹⁰⁾ 그러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준을 국세청에 위임하고 현금영수증 미가맹 및 발급거부에 따르는 불이익을 세법에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행 초기에는 국세청의 행정력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가맹과 발급을 권장하여야 하였다.¹¹⁾

III. 외국의 과세표준 양성화정책과 우리법원의 입장

1.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외국의 과세제도

가. 미 국

미국은 부가가치세와 같은 일반 소비세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며, 거래와 결제가 융합된 영수증 수수관행이 잘 정착되어 있어 이에 대한 필요성도 그리 크지 않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간에 어떤 형태의 영수증이든지 거래 증빙으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으면 세무상 정규 영수증으로 제한 없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경우도 영수증 수수가 완전하지 않아 일부 현금수입업소의 경우 수입금액

7) 1등의 경우는 1억원

8) 이러한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으로 민간 최종 소비지출액 대비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1998년 12.9%에서 2004년에는 41.7%로 약 3.4배 증가하여 거래 투명성 확보 및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9) 또한, 2000년대 초에는 신용카드사의 과다경쟁과 무분별한 신용카드회원 모집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고,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인해 2003년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다소 감소하기도 하였다.

10) 당초 과세관청과 재경부에서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20%)보다 높은 직불카드 수준인 30%로 책정하였으나 각 지불결제수단간 소득공제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모든 카드와 현금영수증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20%로 일원화하였다.

11) 국세청 내부보고서 재구성

양성화에 문제가 있어, 주 정부에서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수입금액 누락이 발견되어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는바, 이에 미국에서는 세무조사대상자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 불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사를 통해 가혹한 처벌을 하고 성실신고자는 보호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¹²⁾

나. 영 국

영국은 일반소비세로서 부가가치세제를 채택·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Tax Invoice) 등 영수증이 기본적인 서류로서 부가가치세제의 근간이 되고 있다. 다만,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우리나라처럼 법정서식이나 교부절차 등에 대한 복잡하고 세부적인 규제가 없고, 세금계산서 등의 정부제출제도도 없으나, 나름대로 통제장치가 잘 되어 있다.¹³⁾

세금계산서의 서식은 법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그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는 VAT 법규(Regulation)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번호, 공급자의 성명·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공급일, 공급받는 자의 성명·주소, 공급형태¹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명세, 공급가액, 에누리율, 세액 등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매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개별 공급가액이 100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고객이 특별히 정규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한 기재사항이 간단한 간이계산서(Less Detailed Invoice)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를 소매명세서(Retailers' Invoice)라고도 한다.¹⁵⁾

또한 영국에서는 영수증의 교부·수취가 부가가치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한 본인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 발행의무를 납세자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도 없다. 다만, 정당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한¹⁶⁾ 탈세 또는 장부의 보관의무 위

12)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사대상 선정제도인 DIF제도와 TCMP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IF(Discrimination Index Function)제도는 총합수 선택제도로써 신고서의 항목별 중요성에 따라서 일정한 계수를 부여하고 신고서의 오류가능성을 총합수로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총합수가 크면 신고서의 오류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납세자 준응도 측정 프로그램인 TCMP(Tax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제도는 국세청의 납세자 신고수준 측정계획에 의하여 모든 신고서 중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무작위로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납세자 신고수준 측정계획은 납세의무자를 업종별·규모별로 선정하여 표본조사를 함으로써 특정업종의 성실신고가 어떤 요소 또는 항목에 의하여 좌우되는지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가중치를 정하여 DIF를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기초 Data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1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는 과세거래를 할 때에 그 상대방에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14) 예를 들면 판매, 임대 등

15) 이 간이서식에는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및 주소, ② 공급일자, ③ 공급되는 재화·용역의 명세, ④ 세포함 공급금액, ⑤ 적용세율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이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Credit Card Voucher)도 소매명세서(Retailers' Invoice)에 해당된다.

16) unauthorized use of tax invoices

반 등의 경우에는 100%의 벌과금, 나아가 심한 경우에는 형사범으로 다루어 300%의 벌과금이나 최고 6개월간의 징역형에 처한다.

다. 일 본

미국, 영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거래증빙으로서의 영수증은 당사자간에 당연히 수수해야 되는 것으로서 영수증 수수관행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수증 수수관행이 정착된 배경은 다른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개인적 필요와 유통과정의 현대화 등 외부여건의 성숙 등에 힘입은 바, 크고 특히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본인 특유의 기록 중시관에 입각한 장부기장제도의 발달도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의 소비세제 하에서는 부가가치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세액계산방식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부 또는 청구서 등 거래 증빙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는 우리나라처럼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에 관하여 서식을 법정한다든가 이의 교부·제출에 관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가 없다.

다만, 장부나 거래증빙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법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 영수증의 자유로운 사용이 간접적으로 제약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매출세액 계산 또는 매입세액 공제계산의 근거가 되는 장부나 증빙¹⁷⁾을 과세당국의 조사나 제시 요구에 대비하여 적어도 7년간은 보관하여야 한다.

라. 중화민국(대만)

중화민국은 1928년부터 영업세(The Multiplestage Gross Receipt Tax: MGRT)를 도입하여 실시해 왔으나 영업세가 갖는 중복과세등 제반 문제점으로 인해 대체세목으로서 신영업세법을 제정하여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화민국의 신영업세제는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와 대체적으로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¹⁸⁾ 과세당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전산입력하여 매입자료와 매출자료를 상호대조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에는 세금계산서 일련번호, 주소, 공급가액, 세액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이 부실하게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영수증의 성실한 수수가 아직 사회적 관행으로 정착되지는 못하고 있다. 즉,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등 모든 세금영수증은 상금당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검증기능이 없기 때문에 탈세예방의 심리적 효과 외에 실질적인 과세자료 양성화 수단으로서

17) 예를 들면 청구서, 납품서 등

18) 세율은 현재 5%이고, 특수업종의 경우 복수세율(1%, 5%, 25%)을 채택하고 있으며, 신고납부는 매 2개월마다 해야 한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정형화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는 미흡하며, 영수증을 안받는 대신 현금할인을 받는 담합행위가 많고, 실물거래 없이 영수증만 발행하는 자료상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과세표준 양성화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

가. 헌법재판소 2005.11.24 선고 2004헌가7 결정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¹⁹⁾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²⁰⁾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5.11.24. 선고 2004헌가7 결정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의 경비 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에게 이러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방법은 적절하다. 나아가 법인에 있어서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의 보존의무는 상법상 인정되는 기본적인 의무로서 상인이라면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이므로, 경비지출의 투명성 제고와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출증빙서류에 대하여 법인에게 수취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의 해태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법인이 입는 불이익이 심각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반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honest한 세정현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국가가 추구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의 법익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동 결정에서는 조세법은 조세행정의 편의와 징세비용의 절감 및 세수의 용이한 적기확보를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본래적 의미의 납세의무 이외에 과세표준신고의무, 성실납부의무, 원천징수의무, 과세자료제출의무 등 여러가지 협력의무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협력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실한 의무이행자에 대하여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의무위반자에 대하여는 가산세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여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19)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된 후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일정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함

20)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작용은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적정해야 하며(방법의 적정성),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것이어야 하고(피해의 최소화), 그 작용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것(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한다.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목적의 정당성에 기본 입법취지를 두고, 거래당사자에게 성실신고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방법은 적절하고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보아, 사업자의 거래투명성 제고와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좀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그 위반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제재를 가한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지 않고 있다.

나. 헌법재판소 2007.5.31 선고 2006헌바88 결정례

이후 같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2007.5.31 선고 2006헌바88 결정에서도 같은 뜻으로 거래의 투명성과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으로써, 현재까지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과세관청의 과세제도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기본 입장은 헌법 제38조²¹⁾에 의한 납세의무는 국가의 유지·발전에 필요한 재정적 기초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성·공익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민의 조세부담능력에 맞추어 과세대상과 과세한도를 공정하게 설정하고,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시키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을 선택하고 필요한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강제적으로 이행시키는 등의 입법형성권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소수 별개의견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출의무와 이행강제는 국민들의 담세능력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헌법 제38조가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에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할 것인지의 문제는 협력의무의 필요성에 맞추어 조세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이 거래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한 것은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지만,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거과세를 확립하기 위한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본 것으로서, 과세자료의 양성화가 정착되지 아니한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조세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입법권의 헌법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협력의무자의 경제적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헌법 제38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3. 소 결

현행법상 현금영수증제도는 조세저항에 대한 우려로 강제성을 부여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도를 강제할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²²⁾ 다만, 국세청 고시 제2004-6호 제4조

21) 헌법 제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22) 현행 법률은 소득 공제에 대한 항목은 명시되어 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강제를 요하는 조항은 없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관리)²³⁾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하는 자’에 대해 설치를 해주는 자발적 참여를 요하고 있다.

이처럼 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이라 하더라도 해당업소에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가 구제받을 길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에서는 규정을 고쳐서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사항으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는 결국 정부가 과표양성화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인 세수확보 및 과세형평성 제고와 개인사생활 보호 등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해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가 없어도 100% 성실 납세하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여기에 강제성을 부여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을 내비쳤다.²⁴⁾

결과적으로, 현행법상으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발급 거부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해 발급거부자의 명단을 수집해 이들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가맹점의 확산과 영수증 발급에 대한 촉진을 유인하고 있는 바, 세금 탈루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개인 병원, 법률사무소 등에서 이용에 대한 지불을 현금으로 할 경우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받는 것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강제력 없는 권고만으로 이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탈루를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IV. 현금영수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검토

1. 현금영수증제도의 문제점

가. 유통, 식음료 업체의 실적 양극화 현상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대형 할인점 및 체인점의 고객증가 현상²⁵⁾을 분석해 볼 때, 고객 10명 중 4, 5명이 현금영수증을 받아가는 스타벅스 명동점의 경우 현금영수증 최저발행한도인 5000원대의 대용량 커피를 찾는 고객이 많아져 2005년 1~5월 동안 5000원 이상 구매고객 수가 지난해보다 7% 증가하였다. 또한, 대형 할인점인 이마트 측은 ‘신용카드 사용 확대로 카드 사용이 쉬운 할인점에 고객이 몰렸던 것처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할인점에는 고객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

23) 국세청 고시 제2004-6호 제4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관리)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보급할 수 있다.

24) 오마이뉴스 2005.5.9자 ‘과세자료 확보하려다 월급쟁이만 덩그러니’ 참조

25) 동아일보 2005.6.2자 ‘현금영수증 시행 5개월’ 참조

상하고, 카드업체와 자주 수수료 분쟁을 빚는 할인점으로서도 현금영수증제도가 1.5%의 카드 수수료를 절약해 주는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²⁶⁾

결국,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투명으로 인한 과세표준 양성화의 효과보다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영세업자들의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다익선의 경제논리로 대규모 판매점에게 소비자들을 빼앗긴 영세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미 과표가 노출되어 있는 대형 판매점의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인한 피해는 없으며 오히려 신용카드 사용보다 현금사용이 활성화되어 카드 수수료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소비자를 유인하므로 이마트 등의 대형 할인점은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을 반기고 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제도는 식음료 유통업체의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부작용을 양산한다.

나. 판매업자 세금부담의 추가부분이 소비자에게 전가

대규모 업체가 아닌 소규모 점포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매출 노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용산전자상가의 경우는 신용카드를 제품 구입시 5%의 웃돈을 소비자에게 강요하였으며 현금영수증제도의 시행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라 소비자에게 약 10% 정도까지의 웃돈을 강요하는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만약 이런 편법이 원천봉쇄된다 하여도 판매업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가중되는 세금의 부담을 상승된 가격설정으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게 되어, 결국 소비자는 10% 상향조정된 재화를 구입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다. 현금영수증 이용자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

과세관청의 현금영수증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정보를 서버에 저장할 때에 주요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를 암호화하여 수록함으로써 외부 사용자는 물론 내부 시스템 관리자도 사용자 개인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유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제도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납세내역을 조회하면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을 입력하게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등을 입력할 때 숫자가 그대로 화면에 표시되면서 내부 직원 또는 신용카드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²⁷⁾ 이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소비자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 주

26) 이와 같이 매출 노출에 따른 세금의 증가로 영세업자들에게 경제적 압박이 심화된바, 대부분의 소규모 점포는 이러한 압박 때문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 주변 편의점 등으로 손님이 옮겨가 매상이 줄고 있다. 즉, 과세가 투명하게 노출되어 있는 대규모 업체에서는 현금영수증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중소규모 점포에서는 과세노출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것이다.

27) 또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때 본인의 신분확인 수단으로 제시가능한 수단인 신용카드 등 13~19자리로 구성된 마그네틱 카드, 현금영수증카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민번호 등이 무방비상태에서 노출되는 문제를 양산시키고 있다.

라. 현금영수증 미가입가산세제도의 불합리

2007년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기타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맹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총수입금액²⁸⁾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²⁹⁾.

그러나 소비자 상대업종의 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확정일 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가입³⁰⁾하지 않으면 당해년도 수입금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자가 가입기간으로부터 단 하루만 경과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도 연간 수입금액 전체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가입기한 경과일수에 비해 과다한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현금영수증미가맹 사업자간 미가맹기간의 차이³¹⁾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간의 연간 수입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하므로 납세자 사이에 불균형한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인다.

또한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을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이 포함된 전체 수입금액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현금영수증발급대상이 아닌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수입금액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부과되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재산권보장의 기본권을 침해한 규정으로 법익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나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 휴대전화번호가 전체 발급건수의 66.4%인 9.8억건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심지어 주민등록번호도 16.6%인 24백만건이 사용되는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8) 미가맹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은 과세표준이 양성화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이 포함된 전체 금액이다

29)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30) 직전년도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2천 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210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31) 가입기간일로부터 하루를 경과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와 수개월을 경과하여 가입한 사업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해태정도의 차이를 말한다.

2.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의 단계적 추진방안 제안

현행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3항³²⁾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3항³³⁾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한 경우에만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어 소비자가 현금결제시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는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해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소비자와 현금영수증가맹점간에 현금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을 확정하는데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국민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되는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 고소득전문직등 현금영수증발급 취약업종대상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를 먼저 시행하고³⁴⁾, 그 후 모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해 점차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를 확대해 가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와 같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바, 이 점은 아래의 ‘다. 개인정보 보안시스템 정비’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혜택 강화

근로자는 2005년의 경우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과세표준에서 소득공제시켜 주었다가, 2006년 발급분부터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2008년부터는 총 급여액

32)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② 생략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이하 생략

33) 법인세법 제117조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② 생략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4) 2007년 국정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변호사의 현금영수증 가입률은 2005년 59%에서 2007년 6월 현재 89%로 높아졌고, 같은 기간 변리사의 가입률은 53%에서 95%로 각각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기간 현금영수증을 한 차례라도 발급한 사업자의 비율을 보면 변호사는 66%에서 26%로, 변리사는 60%에서 23%로, 세무·회계사는 79%에서 35%로 떨어졌다고 보고하였다.

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실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금액은 2005년보다 낮아졌다. 더욱이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받아도 세제개편 없이는 세금혜택이 전년도보다 크게 높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금영수증제도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적정수준으로 늘려주어야 한다. 다만 지속적인 경제적 보상도 한계가 있으므로, 소득공제혜택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는지 및 어느 수준의 소득공제혜택이 적정수준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과세관청에서는 그 비용 대 효과분석을 하고, 일반 국민들의 현금영수증 받기가 습관화되면 그 지속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개인정보 보안시스템 정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는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매개로 회원가입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거래내역 조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바, 학계·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의 ‘소극적인 보호’에서 탈피하여 자기정보통제권 등 적극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므로,³⁵⁾ 개인정보보안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첫째,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에서 상담요원이 전화상담 외의 방법으로 상담요청자의 개인정보를 조회시 처리자의 인적사항 및 처리내용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보유출 차단 및 책임소재를 명확화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 보안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현금영수증 사용자의 개인정보³⁶⁾를 암호화하여 전송하고 저장함으로써 외부사용자는 물론 시스템 관리자도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보안프로그램을 적용한 사용자의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에 현재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에 사용자의 카드번호와 계좌번호를 추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현금영수증사업자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현금거래내역, 사업자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현재 전용망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암호화시스템이 부족하여 암호화 S/W 설치 및 38개 현금영수증사업자와 동시에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라.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차등적용 및 적용범위 개정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때 가입 월별로 가산세를 차등 적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을 주어 가맹점 가입을 유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³⁷⁾에 규정한 가입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경과

35) 국회·언론 등에서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36)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37)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시마다 현금영수증미가맹 가산세율 1천분의 5의 10분의 1씩 증가시켜 차등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³⁸⁾ 다만, 가입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분의 5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가입가산세 대상 총수입금액을 현재는 과세표준이 양성화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이 포함된 전체금액에 대해 부과하고 있으나,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닌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수입금액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중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을 제외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수입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당초의 취지와 보다 부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V. 맺음말

현행법상 현금영수증제도를 어느 범위까지 발급의무화할 것인지의 문제는 결국 정부가 과표양성화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인 세수확보 및 과세형평성 제고와 개인사생활 보호 등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증가추세가 현격히 둔화되고 있으며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급증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를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다른 대안이 필요하고, 현금영수증제도는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좋은 방법이다.

또한, 현금영수증 제도의 도입목적 중 하나가 원천징수를 당하는 직장인과 세원포착률이 낮은 자영업자 사이의 조세형평성을 높이는데 있는바,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소득자들은 원천징수를 당하는데 비해 자영업자들은 근로소득자들에 비해 자유로이 소득을 조절할 수 있었고, 이는 원천징수 당하는 근로소득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평등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제도의 도입으로, 조세형평성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³⁹⁾

결국 현금영수증제도의 시행은 조세정의를 위해 과세의 기준이 되는 세원을 포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도 필요한 시책이라 할 것인바, 이 제도를 더욱 올바르게 정착시켜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는 다음 사항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현금영수증 발급에 소극적인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병·의원사업자, 학원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러한 발급의무화

38)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현금영수증미가맹점이 가입기한 경과일수에 비해 과다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39) 일반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영업자 비율이 낮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높은 비율의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된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것이 정부로 하여금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게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정책이 정착단계에 이르면 이를 모든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대상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시행초기보다 감소된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혜택을 적정수준으로 늘려 현금영수증 주 사용계층에 대한 관심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현금영수증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안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 대한 가산세 부과규정을 개정하여, 가맹점 가입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경과시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율 1천분의 5의 10분의 1씩 증가시켜 차등적용함으로써,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이 가입기한 경과일수에 비해 과다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가입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총수입금액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중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을 제외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당초 가산세 부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현금영수증제도 관련 개선방안들이 기 제기된 문제점의 충분한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위의 개선방안들이 제도화된다면 현금영수증제도가 더욱 견고해지고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이용이 활성화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간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 등을 통해 형평과세가 이룩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중호. 2004. 주요국의 조세제도 - 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박정수. 2004. 주요국의 조세제도 - 영국편. 한국조세연구원
서희열. 2004. 세법총론. 세학사
장근호. 2004.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장근호. 1996. 주요국의 조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최명근 · 나성길. 2005. 부가가치세법론. 세경사
한국조세연구원. 2006.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3.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에 관한 연구
김한년. 2004. “과표양성화를 위한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양시진. 2006. “영수증제도 등을 통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논문
이성식. 2005. “부가가치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논문
임일제. 2006. “현금영수증제도 생활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논문
정운옥. 2004.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홍옥진. 2004.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거래활성화를 통한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A Study on Cash Receipt System under the Tax Law

Young-Sim Kim* · Kyu-Hyun Park**

〈Abstract〉

Because cash transactions take up a large percentage of the whole in our country,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grasp the tax basis for the self-employed, and therefore, there are limits to capturing the tax sources. This has been presenting an obstacle to the government's policy to obtain a fair taxation system through impartial taxation, and the government finally adopted for the first time on January 1st, 2005, the cash receipt system in order to establish transparency with tax sources and fair taxation.

At first, the cash receipt system was executed in order to integrate the society and to narrow the gap between the wealthy and the poor; however, in reality, the current cash receipt system is being utilized mainly by the consumers and small businesses that use small cash transactions. Even if the purpose behind a law's legislation is legitimate and the method is appropriate, we must not overlook the fact that if the protected public good infringes upon the private good, it could be violating "the minimal infringement principles", which is a part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rohibiting overabundance.

Therefore, the following issues must be reformed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cash receipt system and utilize it in the right manner.

First, it must be made mandatory for professional businesses and educational institutes to issue cash receipts even if the consumers do not request for cash receipts, and when this policy settles down, then it must be expanded to all cash receipt issuing businesses.

Second, we must raise our interests on the main users of the cash receipts by expanding on the benefits of the annual income deduction for the wage earners, which have been reduced since the execution of this policy.

Third, there are concerns about personal information leaks for cash receipt users, and therefore, we must improve the security system on personal information, so that consumers can request for cash receipts with a peace of mind.

Fourth, we must improve the additional tax imposition on non-issuers of cash receipts, in order to rightly reflect the purpose behind this additional tax imposition.

* Assistant Professor, Law School, Sogang University

** Examiner at National Tax Service, Master of Law

The improvement proposal laid out above will not provide a complete answer to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cash receipt system ; however, we expect that it will provide the foundation on which the issue of fair taxation can build upon by solidifying and vitalizing the cash receipt system and also by securing data on taxation.

<Key words> the cash receipt system, transparency with tax sources, fair taxation, the policy to make mandatory for businesses to issue cash receipts, the security system on personal information